

일본의 난가안정 대책(Ⅲ)

임 덕 성

대한양계협회 사무국장

사 단법인 전일본난가안정기금은 업무방법서(業務方法書)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업무방법서는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소개코자 한다.

(목적)

이 업무방법서는 사단법인 전일본난가안정기금 정관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시행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운영의 기본방침)

기금은 시행하는 업무의 공공(公共)의 중요성에 비추어 행정관서와 기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연락하에 그 업무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가입생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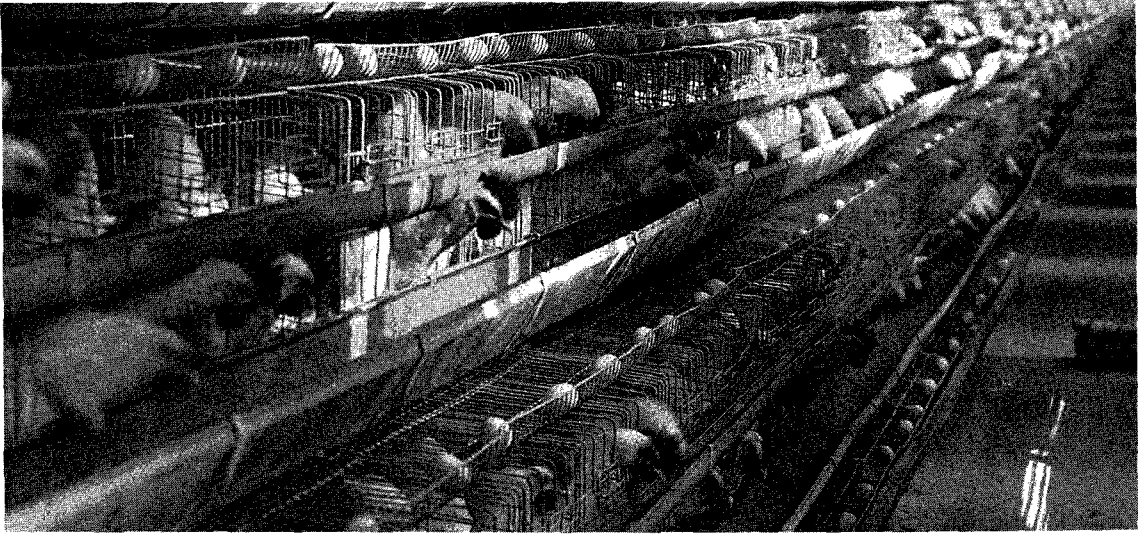
기금이 이 업무방법서에 의한 계란의 가격차보전사업의 대상이 되는 계란생산자는 상시(常時)100수 이상의 채란용 성계 암컷을 사육하고 생산되는 계란전량(全量)을 농협에 판매위탁하고 있는 자로서 별도 계란가격차보전계약 실시기준에 의하여 가입되어 있는 농협과 생산되는 계란전량에 대하여 가격차보전에 관한 기본계약 및 연차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

(계란의 가격차 보전계약)

1. 기금은 기본계약기간 개시전에 그 출자회원인 농협 또는 농협연합회로서 다음 요건에 적합한 신청에 바탕을 두어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회원과 당해 기본계약기간에 관한 계란가격차보전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기본계약기간에 속하는 각 연차의 개시전에 당해기본계약의 잔여기간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당해 회원의 지구(地區)가 전국 구역일 때

(2) 정부가 수립한 계란수급전망에 부응한 계란생산 출하계획을 정하여 이 계획에 근거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계란생산지도 및 수탁판매를 시행하고 있을 때



(3) 당해 회원의 채란양계에 관한 지도 및 계란수탁 판매체제가 정비되어 있을 때

(4) 당해 회원의 직접 또는 간접적 구성원(構成員)인 계란생산자의 상당수가 가입생산자로서 인정되었을 때

2 기금은 신청회원으로서는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 다음 서류를 기금에 제출토록 한다.

(1) 신청회원이 전항에 규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증명서류

(2) 신청회원과 가입생산자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체결된 계란가격차 보전계약의 개요

(3) 신청회원이 정해진 기본계약기간 및 당해계약 기간 중에 있어서의 각 연차의 계란생산 출하계획

(4) 기타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이 업무방법서에서 기본계약기간이라 함은 기금이 계속하는 3사업년도의 기간을 말한다.

기금은 신청회원과 계란생산자간에 별도 계란가격차 보전계약 실시기준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계란 가격차 보전에 관한 기본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해 신청회원과 기본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연차계약)

기금은 기금계약의 각 연차에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 전에 연차계약서에 의하여 기본계약을 체결한 회원과 당해연차에 관련되는 계란가격차 보전연차계약을 체결한다.

(가격차 보전이 대상으로 하는 계란)

기금이 이 업무방법서에 의한 가격차보전의 대상으로 하는 계란은 농림수산부가 정한 계란거래규격의 1급 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것(적격란)으로서 계약회원(농협, 농협연합회)이 가입생산자의 직접 또는 간접적 위탁에 의하여 판매한 것으로 한다.

(계약대상 수량)

1 기금은 기본계약 및 연차계약에 있어 계란의 계약 대상수량을 약정한다.

2 전항의 계약대상수량은 기본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계약기간에 있어서의 연차별 도도부현별(都道府縣別)의 수량, 연차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계약기간 중에 있어서의 도도부현별 및 월별(月別)의 수량으로 하고 계란생산출하계획에 따라야 하며 시정촌등(市町村等)계란수급조정 협의회에서 확인된 채란계 사육수수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3 기금은 계약기간 중에 있어서의 계약대상 수량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단 재해의 발생, 계란수급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계약의 해제 등)

1. 기금은 기금과 기본계약 및 연차계약을 체결한 회원(계약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기본계약 또는 연차계약을 위반했을 때에는 기본계약 및 연차계약을 해제하고 기본계약에 근거한 당해연차계약의 잔여기간에 있어 납부하여야 할 보전 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고난가월의 보전적립금에 있어서는 당해계약해제일을 포함한 월 이후의 달에 걸리는 것은 제외)을 징수한다.

2. 기금은 기본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있어서 계약회원으로부터 계약해제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회원이 기본계약에 근거한 당해연차계약의 잔여기간에 있어 납부해야 할 보전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에 따를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그렇지 않다.

(보전적립금액)

1. 기금은 매사업년도, 당해사업년도 개시전에 평의회(評議員會)의 의견을 듣고 또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계란의 단위수량당의 보전적립금액 및 고난가월(高卵價月)에 있어서의 단위수량당의 보전적립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에 적립금액은 계란수급의 관측, 당해사업년도의 기준가격 및 전사업년도말에 있어서의 보전준비재산금 및 이 기금과 같은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에 있어서의 출자회원의 보전 적립금을 감안하여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보전적립금을 부담하는 자는 가입생산자 외에 계약회원 및 그 직접구성원인 농협 또는 농협연합회이며 기금의 계란가격차 보전사업에 참가하는 자(加入農協)에 한한다.

3. 보전적립금에 있어 가입생산자가 부담하는 것은 기금이 별도로 정하는 계란판매소에 있어서 최근 1년 동안에 판매된 적격란의 판매수량에 따른 가중평균판매가격의 1,000분의 25 이내로 계약회원 및 가입농협이 부담하는 것은 그 합계액이 가입생산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기 정한다.

4. 기금은 계란의 수급동향, 가격의 추이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전적립금을 개정할 수 있다.

5. 기금은 보전적립금을 결정 또는 이것을 개정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함과 아울러 회원에게 통지한다.

(보전적립금의 납부)

기금은 매사업년도 계란의 단위수량당의 보전적립금액에 당해사업년도에 관련되는 연차계약의 계약대상수량(고난가월의 적립금은 계약의 당해월의 계약대상수량)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보전적립금으로 하여 계약회원이 납부토록 한다.

2. 전항의 보전적립금중 가입생산자가 부담하는 것은 매사업년도의 4분기마다 당해 4분기의 개시전(고난가월의 적립금은 당해월의 다음다음달까지)에 당해기(고난가월의 적립금은 당해월)의 계약대상수량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3. 기금은 계약회원 및 가입농협이 부담하는 보전적립금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다.

(보전적립금의 불상환)

기금은 납부된 보전적립금은 상환하지 않는다.

(보전적립금의 분할상환)

1. 기금은 기본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보전적립금의 잔액이 당해기간 중에 납부되어야 할 보전적립금의 합계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기간중 기금과 계속하여 기본계약 및 연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계약을 이행한 계약회원에 대하여 그 초과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이들 회원이 당해 기간 중에 납부한 보전적립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환한다.

2. 기금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회원에 상환한 금액 가운데 당해금액에 전항의 기본계약기간 중에 당해 계약회원이 기금에 대해 납부한 보전적립금의 합계액에 대한 가입농협 및 가입 생산자가 당해 기본계약기간 중에 부담한 보전적립금의 합계액의 비율로 곱하여 얻은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계약회원으로 하여금 가입농협 및 가입생산자에 대하여 당해 가입농협 및 가입생산자가 기본계약기간 중에 납부한 보전적립금 합계액을 한도로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환한다. (다음호에 계속) **당첨**